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05회 제1차 정례회(2016.0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용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10일(金), 백남환 의원외 17명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6년 6월 10일(金)

4. 관련 법령

-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6. 주요 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와 대행사업 등 용어 정의함(안 제2조)

나.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기간을 2년→3년으로 확대함

(안 제9조제3항)

다.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후 대행업체 적정여부 판단토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라. 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신설 조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2)

1) 대행업체 선정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2)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할 내용(청소예정구역 등)

3)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

4) 대행업체 변경 시 대행기간 동안 업무인계하고, 주민불편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

5) 대행업체 대행계약 해지할때에는 해약 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

마. 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신설 조항을 규정함 (안 제9조의3)

1)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처리 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

2)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한다

바.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 조항을 규정함

(안 제9조4)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 조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5)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다.

2)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 1명
3. 주민대표 3명
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5.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됨

5)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 위원회 회의 등 신설 조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6)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7.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0일 백남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에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행사업 업무와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공정한 선정 및 평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